

<편집위원 칼럼>

육 계

필자의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축산물 가공처리법 (이하 축가법이
라 칭함)에 의한 닭고기 유통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시행된 당국의 생
계단속과 시장상인의 숨바꼭질, 그리고 양계농민의 피해는 햇수로 따져
서 무려 6년전인 76년부터 계속되어 왔다.

6년여동안 계속되어 오면서도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도계유통 강행을 위한 당국의 생계단속은 그동안 여러가지 특이한
현상들을 유발케 하였고, 이에 대한 논란도 매우 많았었다. 76년부터 매
년 몇번씩 간헐적으로 시행된 생계단속은 그때마다 육계가격의 하락과
육계출하의 질서에 혼란을 가져왔기 때문에 양계농민의 뇌리에는 축가
법에 의한 도계유통이 어떠한 발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기
에 앞서서 체질적으로 기피하고 원망하는 대상이 되고 말았다.

76년 당시 대한양계협회를 중심으로 둉쳐진 육계 생산자들과 당국과
의 충돌사건,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육계가격의 돌발적인
하락현상들, 인정된 생업속에서 손님을 잊지 아니하기 위한 가격경쟁으
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던 시장상인의 낮은 유통마진이 폭리를 이루
면서 장사하게끔 유도된 생계단속의 영향, 국보위에 제출되었던 민원서
류 중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항간의 말에 의함) 축가법
에 의한 도계유통 — 등등, 이러한 속칭 도계법에 대한 찬반논쟁도 또
한 6년여동안 무수하게 열기를 더해 왔다. — 이제, 지난 4월부터 시행
된 도계법 강행이 양계 사상 최초로 초복에 시장의 닭집문을 닫게 하면
서 또다시 양계 업계의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6년여동안 그렇게도 간절하게 시도된 속칭 도계법이 왜 아직까
지 정착되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고 있는가? 속칭 도계법에 관련되고 있

유통



신정일

(구랑랜드·본회편집위원)

논 그룹(Group)을 분류해 보면, 당국, 도계장측, 시장상인들, 양계농가, 그리고 소비자들의 5개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당국과 도계장측을 이를 강행해야 한다는 편이고 시장의 생계상인 측은 반대편이다. 지난 76년부터 약 6년동안 서울지역 육계 소비량은 1일 평균 10만수—총 중량 15만 kg으로 추산하고, 년중 평균 6개월동안이 생계 단속에 의해 육계가격 1g당 100원이 하락 영향을 받았다고 계산하면 전체 약 150억 원의 손실을 양계농가가 이 기간동안 당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소비자들은 도계법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찬반의 논쟁에 열을 올리지 아니한다. 다만 그들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생닭을 사먹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그들 소비자들도 역시 이 기간동안 생계 단속으로 인한 시장유통 질서의 혼란으로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이 도계법에 대한 명분이나 의의를 따지기 전에 6년동안 현실적으로 나타난 도계법 현상을 분석한 것이다.

- 시민위생을 위해서는 도계법을 시행해야 한다.
- 양계산업의 방역이나 유통질서를 위해서 시행해야 한다.
- 법(法)이 있으니까 시행한다.
- 소비자가 도계닭을 기피하기 때문에 안 된다.
- 도계 능력이 부족하다 혹은 충분하다.
- 현재 우리나라 도계 시설로서는 연성의 닭고기를 신선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없다.
- 다른 지역은 다 시행되는데 왜 서울만 안되는가?
- 국민의 식생활을 하루아침에 변경할 수는 없다.
- 생계단속을 강하게 시행하면 가능한데 당국의 단속이 미흡해서 잘

안된다.

●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데 시장의 닭고기 유통도 도계로 해야 한다 — 등등!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 도계법에 대한 찬반이론이 무수히 많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장의 상권쟁탈이다. 지금까지 닭고기 유통의 주역을 담당해온 기존의 생계 상인들과 법(法)에 의하여 새로이 등장한 도계장 측과의 상권쟁탈인 것이다. 당국이 “법이 있으니까 법질서를 지킬 뿐” 혹은 “시민위생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라는 등의 명분으로 도계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위의 두개 상인 그룹의 상권쟁탈의 와중에 휘말려 6년동안 허덕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닭고기에 대한 도계유통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모두가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왜 6년동안 이라는 노력에도 이의 시행이 잘 안되는 것인가? 당국도 이제는 도계유통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그 방법에 대하여 재고를 해 봐야 한다. 지난 6년동안 생계단속을 시작할 때면 으레히 당국은 이번에는 꼭 뿌리를 뽑겠다든지 이번에는 반드시 시행한다라고 결연한 태도로 임해 왔다. 그러나 번번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앞으로 이러한 혼란은 몇년을 더 겪어야 할 것인가! 도계유통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모두가 찬성하고 있는데, 6년이라는 기나 긴 기간동안 안되고 있다면 그 방법에 반드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닭고기에 대한 도계유통은 경제질서이지 결코 법질서가 아니다. 자유 경제체제 하에서 시장유통 질서는 사회의 발전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고 변화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자연현상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법으로 강행하려할 때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당국은 혼히 시장 상인과 양계농가가 협조하기 않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다. 그날 그날 벌어 먹고 사는 상인과 사육된 닭이 출하되지 아니하거나 가격이 떨어지면 당장 사업유지가 안되는 양계인에게 어떻게 희생을 감수하면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도계유통은 상거래 질서이다. 도계법의 가장 큰 모순은 지금까지 좋으나 궂으나 육계유통의 구역을 담당해온 시장생계 상인의 상권을 뚱뚱 뺏어다가 도계장 측에 넘겨주려고 하는 점이다. 현재의

점포에서 도계를 취급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바로 상권의 이양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생계상인들의 양계농가에 대한 횡포나 부조리 등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고 현재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윤을 찾아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상인들의 태도를 전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점점 개방사회, 자유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고, 지금까지 시행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킨 강압적인 방법은 차츰 제거되고 자연발생적이면서도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도계유통에 대한 방법도 마찬가지이다. 이 시점에서 도계유통을 무리없게 시행하고 양계산업과 시장질서를 발전시키자면 현재의 시장내 모든 생계상인에게 “생계를 판매하기 위한 계류”만을 금지하고 어디서 누가 도계를 하든 일단 도계탕만 비치나열하고 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사회가 발전하면서 경쟁에 이길 수 있는 도계품을 생산하는 도계회사가 생기고 이러한 경쟁이 더욱 위생적이면서 합리적인 시장유통질서가 형성되게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현재의 시장 생계 상인에게 마음대로 도계 판매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해서 롯데백화점이나 한남체인이 결코 그들에게 도계 위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도계장 측은 이러한 시장을 점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통질서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준다. 당국의 고심, 도계장측, 생계상인측, 양계농가, 낮은 유통마진에 의한 시장질서로 소비자의 보호 등 —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알맞는 방법을 택하여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외국에서 시행한다고 하여 그것을 하루 아침에 그대로 행하려 한다는 것은 모순만 낳게 한다.

누구든지 한사람이 칼자루를 쥐고 독점이윤으로서 배불리 살겠다는 비리는 앞으로 빨을 못 붙일 것이다. 다만 선의의 경쟁으로 바른 길 (正道)을 향한 발전만이 우리를 국제적으로 키워 줄 수 있다.

김현옥 전 내무장관의 지방 중학교장 귀임, 선우휘 조선일보 주간의 상기 사항에 대한 감탄기사, 신태환 한국경제연구원장의 거국적인 서해안 대간척사업 제언, 전두환 대통령의 위대한 태평양시대의 도래천명 — 이 상은 최근 우리나라 사회상으로 나타난 일련의 고무적인 4가지 사항들이다. 격(格)에 어울리는 생각과 행동들이라 흐뭇하다.

진리를 지향한 생각과 실천만이 우리를 크게 키워준다.